

의안번호	2219651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6.8.28.
추계번호	26C321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의무복무기간)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14조 (보수 등)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 (의무복무기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 (보수 등)	

2. 상세 사유

□ 의무복무기간 및 보수(안 제8조 및 제14조)

- 개정안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의 증감요인이 상존하나, 그 증감 방향과 규모를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추계 대상의 범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중, 현행법 제14조에 따

른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동 개정안의 추계 대상에 해당하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연계 법률안¹⁾에서 추계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됨

- (증감요인) 추가재정소요 대상 비용인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상반된 요인이 상존함
 - (감소요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줄어들어 보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 (증가요인) 반면,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익법무관 지원 유인을 강화하려는 만큼, 공익법무관 신규임용 인원이 증가하여 배치 현원의 확대에 이어질 경우 보수 지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2022~2026년 공익법무관의 총인원과 신규임용 인원은 다음과 같음(당해연도 총인원은 직전 2개연도 및 당해연도의 신규임용자를 합한 수와 같음)

[표 1] 공익법무관 총원과 신규임용 인원: 2022~2026년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평균
신규임용	40	63	68	64	32	53.4
총원	122	131	171	195	164	156.6

자료: 법무부

- 현행 기준 최근 5개년 신규임용자 평균 수(53명)만큼 신규임용 수가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와 개정안에 따라 2028년 이후 공익법무관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어 신규임용이 100명²⁾으로 증가하여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익법무관의 총원은 다음과 같음

1)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9653호)은 의무분야 인력(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2) 2024년 이후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모집공고에서 필요인원을 100명으로 공고하고 있음

[표 2]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익법무관 총원과 신규임용 인원 추계: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현행 (3년 복무)	신규임용	53	53	53	53	53
	총원	138	159	159	159	159
개정안 (2년 복무)	신규임용	100	100	100	100	100
	총원	185	253	200	200	200
총원 차이		47	94	41	41	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또한,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로 지급할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익법무관 증가 수에 국가가 공익법무관에게 지불하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해당 보수액에서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액을 차감한 차액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익법무관의 보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보수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현시점에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2026년 기준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인건비(월급, 정근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포함)로 77억 8,631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